



인천광역시교육청

수신 수신자 참조

(경유)

제목 학원 어린이통학버스 안전사고 예방 협조 요청

1. 지난 2018.8.17일 동두천의 한 어린이집 통학버스에서 아동이 질식사하여 숨진 사고가 발생한 바,
2. 학원 어린이통학버스에서 이러한 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안전사고 예방에 각별히 유의하여 주시고, 다음 사항에 대한 협조를 요청드립니다.

- 학원 어린이통학버스에 '잠자는 아이 확인장치'(Sleeping Child Check) 등 차량안전장치 자율적 도입 안내
 - * 잠자는 아이 확인장치*(Sleeping Child Check): 운전자가 시동을 끄과 동시에 차량 내외부 경광등이 울리며, 차량 맨 뒷자리의 확인벨을 눌러야 경광등 울림 해제(설치비 약 25~30만원 소요)
 - 특히, 유아가 탑승하는 학원 어린이통학버스에 대해서는 '18년 하반기 내 우선적으로 도입될 수 있도록 협조
- 현행, 「도로교통법」상 안전교육 의무자가 아닌 동승보호자에 대해서도 안내를 통해 온라인 안전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협조(18.6월말 기준, 약 71% 수준)
 - * 「사이버교통학교」 (<http://cyedu.koroad.or.kr>) 온라인 교육(도로교통공단 개설)
- 매년 실시하고 있는 학원장 연수 시 어린이통학버스 관련 준수사항 반드시 포함하여 실시
 - * 어린이통학버스 관련 준수사항: 어린이통학버스 신고, 유상운송 허가, 보호자 동승의무, 운전자의 안전조치, 안전교육 이수 의무, '어린이통학버스 관리시스템'에 통학버스 정보 입력 등
- 교육지원청 학원 지도·점검 시 어린이통학버스 관련 준수사항 이행 여부 반드시 확인
 - 매년 실시하는 '어린이통학버스 안전관리 현황조사'와 연계한 학원 운영자의 어린이통학버스 준수사항 이행 관련 집중 지도·점검(9~10월 중)

3. 덧붙여, 어린이 통학버스 운행학원을 대상으로 '잠자는 아이 확인장치' 등 안전장치 설치 여부를 2018.10월 및 12월에 전수조사할 계획임을 알려드리며, (추후 별도 안내)
4. 「도로교통법」상 어린이통학버스 안전교육 이수 의무(운영자, 운전자)를 이행하지 않은 학원에 대해 제재할 수 있도록 「학원법」상 행정처분 기준을 마련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. 끝.

인천광역시교육감



수신자 을교, (사)한국학원총연합회인천광역시지회

★주무관 노소미 평생교육팀장 김영진 평생교육체육과장 09/17 한광희

협조자

시행 평생교육체육과-14353 (2018. 9. 17.) 접수 ()
우 21554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9 (구월동, 인천광역시교육청) / <http://www.ice.go.kr>
전화 032-420-8292 /전송 032-420-8317 / nosomi@korea.kr / 공개

"공정", "친절"이 곧 "청렴"입니다.

2018.09.17 14:13